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5. 3. 19.(수)
금융위 의결 후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부과 -

- ◆ 금융위원회는 '25.3.19.(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페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이후 자산건전성 등이 이미 개선되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였으며,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음
-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상상인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임
-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통해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

금융위원회는 '25.3.19.(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페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였으며,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24.12월말)은 10.5%로 규제비율 8%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경영실태평가 결과,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저축은행이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며,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24.12.24일 경영개선권고를 기 부과받은 저축은행 2개사도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24년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가 둔화되고 자본확충 등으로 BIS비율은 개선되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BIS비율(%) : 13.2('22말) → 14.4('23말) → 14.7('24.3말) → 15.0('24.6말) → 15.2('24.9말) → 15.0('24말)
 연체율(%) : 3.4('22말) → 6.6('23말) → 8.8('24.3말) → 8.5('24.6말) → 8.9('24.9말) → 8.5('24말)
 고정이하여신비율(%) : 4.1('22말) → 7.8('23말) → 10.3('24.3말) → 11.8('24.6말) → 11.4('24.9말) → 10.7('24말)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시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하여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이정민 (02-2100-2993)
<공동>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	책임자	국 장 이건필 (02-3145-7410)
		담당자	팀 장 이정만 (02-3145-7370)

1. 이번 경영개선권고 부과 경위는?

- 감독당국은 상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건전성이 악화되어 관리 필요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신속하게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결과에서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나와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되었음
- * ① 종합등급 1~3등급이며,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4~5등급 : 경영개선권고
 ② 종합등급 4~5등급 : 경영개선요구

2. 이번 경영개선권고 부과의 의미는?

-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해 신속한 경영개선을 유도하여 건전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권고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의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다름
- * (경영개선권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감액, 경비절감, 배당제한 등
 (경영개선요구) 임원진 교체요구, 조직축소, 자산처분, 영업의 일부정지 등
 (경영개선명령) 6월이내 영업정지, 계약이전, 임원 직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6개월) 중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임

3. 상상인저축은행의 현재 경영현황은?

- 상상인의 '24.12말 기준 연체율(18.70%^{잠정}) 및 고정이하여신비율(26.90%^{잠정})은 높은 수준이나(업권평균 연체율 8.52%^{잠정}, 고정이하여신비율 10.66%^{잠정})
- BIS비율(10.50%^{잠정}) 및 유동성비율(204.05%^{잠정})은 규제비율(BIS비율 8%, 유동성비율 100%)을 상회

4.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3개사(폐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와 상상인 저축은행의 차이는 무엇인지?

- ☐ 상상인은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이후에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단기간내 자산건전성 등급 개선 여부가 불확실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음
- ☐ 폐퍼·우리·솔브레인의 경우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대출을 정리하여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되었고
 -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것임

5. 안국·라온저축은행에 이어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경영개선 권고가 부과되었는데, 향후에도 추가적인 적기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 ☐ 감독당국은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전성이 악화되어 관리 필요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신속하게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 향후 추가적인 적기시정조치 여부는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 다만, 최근 저축은행업계는 전반적으로 적기시정조치의 주된 원인이었던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 PF성 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

(‘23말) 10.7% → (‘24.3말) 20.4% → (‘24.6말) 28.9% → (‘24.9말) 29.2% → (‘24.12말) 27.3%^{잠정}

**6.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저축은행업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 모럴해저드, 대규모 불법·부실대출 및 열악한 손실흡수능력 등의 경영상황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리면서,
 -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BIS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하여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방식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된 것임
 -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임

* BIS비율(%) : ('11말) 6.8 vs ('24.6말) 15.0 ('24.9말) 15.2 ('24.12말) 15.0
 연체율(%) : ('11말) 20.3 vs ('24.6말) 8.5 ('24.9말) 8.9 ('24.12말) 8.5
 고정이하여신비율(%) : ('11말) 25.6 vs ('24.6말) 11.8 ('24.9말) 11.4 ('24.12말) 10.7

7. 이번 경영개선권고 부과가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경영개선권고는 부실자산 처분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금·대출 관련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
 - 또한,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저축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 불필요하게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할 필요

◆ (예시) '24.7.1일 연이율 3.9% 및 만기 1년 정기에예금에 4천 5백만원을 가입한 경우,
 ① '25.6말 만기 시점까지 유지시 이자 1,755,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②'25.3월중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658,125원만 수령 가능하여 1,096,875원 손실 예상

* 중도해지이율(예시) : (~1개월) 보통예금 이율, (2~10개월) 약정금리X50%, (11개월 ~) 약정금리X55%